## 고 시

## 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2호

##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남양주 양정역세권 S-5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 양정역세권 S-5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 공분양)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> 2023년 1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남양주 양정역세권 S-5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공공분양)
- 2. 사업시행자
-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
- ㅇ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3. 사업개요
  - 대 지 위 치 :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270-1 일원(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S-5BL)
  - 사 업 면 적 : 31,014.00 m²
  - ㅇ 대 지 면 적 : 31,014.00 m²
  - 연 면 적: 89,085.39 m²
  - 사 업 규 모 : 아파트 9개동(공공분양 598세대, 10~28층 이하) 및 부대·복리시설
  - ㅇ 구 조: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
- 4. 사 업 비 : 270,015,089천원 (주택도시기금 39,270,000천원)
- 5. 사업기간 : 사업승인 고시일 ~ 2031.01
- 6. 기 타 :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,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0 2-3416-3851)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